

[]등록
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
[]변경등록
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등 록 20 일 변경등록 7 일
신청인	기관(업체)명	법인등록번호(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)		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		
	영업소 소재지			
	담당부서 전화번호(팩스번호)	전자우편		

변경내용 및 사유(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적습니다)

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5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
따

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[]등록
[]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등록 신청의 경우 가.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(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나. 「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) 다. 「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자 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.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	수수료 없음
업무처리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, 개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) 2.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자가 사업자등록증
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